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가단339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소송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현주

변론 종결 2024. 11. 1.

판결 선고 2024. 11.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구로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65,45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2023. 8.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2인 대표이사 중 한 사람으로, 당시 원고에게 구두로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약정서 하단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5,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 및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의 하단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을 뿐, 위 약정서에 피고의 보증의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그 약정의 당사자들인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서명·날인을 위한 "갑", "을" 항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을 위한 별도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 개인의 인감증명서 등 피고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첨부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아름

별지